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중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98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.

발의자 : 김중로 · 이언주 · 주승용

신용현 · 김삼화 · 황주홍

정동영 · 조배숙 · 이동섭

김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개발법」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·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. 그러나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‘토지개발사업’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는 의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·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20호 신설).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제1항에 따
른 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1항제20호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
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</p> <p>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·인가·허가·협의·동의·면허·승인·처분·해제·명령 또는 지정(이하 “인·허가등”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.</p> <p>1. ~ 19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「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·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